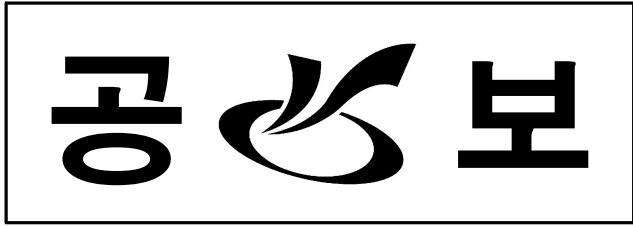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37호
2008년 5월 16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8호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 관리 조례시행규칙 15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0호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4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39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8호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하고 “푸른희망서구 21추진협의회”를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한다.

제3조제1호와 제3호 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인”을 “15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감사) ①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와 제18조제1항 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 로 한다.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수당 등) 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 마을(이하 "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
2. 체험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
3.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지원 및 자문
5. 해양생태 자원보전 및 관리 자문
6. 방문객의 만족도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개선
7.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주민, 유관기관단체장,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차상위 계층노인,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노인
- 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단체

제3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 3. 노인의 날, 경로회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 4.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정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를 실시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원
5.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7조제4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관련자”를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8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기금담당과장 ” 으로 하고, “당해업무담당주사” 를 “기금업무담당” 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중 “한다.”를 “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가정사업계용봉투” 다음에 “공공용봉투”를 삽입하고, 같은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용봉투 : 옅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를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주민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 제목을 “쓰레기봉투의 매수”를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별표3의 봉투용량 50ℓ, 100ℓ의 종류 란에 “공공용봉투”를 삽입한다.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중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560-4391 ~ 6)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583-0789, 583-2363)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어촌체험마을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마을종합안내소, 안내판
2. 휴게쉼터(바비큐시설) 및 밭농사 체험장
3. 갯벌 체험장 진입로 및 데크
4. 기타 구청장이 어촌체험마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대) ① 어촌체험마을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계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어촌체험마을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어촌체험마을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 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결산서 1부.
- 2. 사업실적보고서 1부.
- 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장 직인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겨야 한다.
- ③ 공인의 관리는 위원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신 청 서

- 1.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단체) 명		법 인 구 분	시설(), 지원()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주민번호	
대표이사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대표자 이력서
 -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월창동 세어도 일원

시설물 : 마을종합안내소, 휴게쉼터 및 바비큐장, 발농사체험장, 갯벌체험장 진입로 및 데크, 안내판 등

위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서구청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① 갑은 위 표시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예정일) ①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을 (수탁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시설 점검표

담당자	담당	과장

분야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사항
건축	건축물 조경 토목구조물 (데크 등)		
기계	냉, 온수기 보일러		
전기	메인 판넬 선로 누전상태		
통신 음향	음향 설비 통신, 방송설비		
기타	발농사 체험장 친환경 화장실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0호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시설개선 용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4조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조사”를 “현지조사”로 한다.

제5조 중 “용자금액등을 정한 기금용자 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을 “용자금 액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업종별 용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제6조제4항제1호 중 “2월”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로 하며,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8조 중 “연리 3퍼센트(확정금리)를”을 “별표를” 로 한다.

제9조를 제9조의1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1(종전의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자조건 및 범위

1. 용자조건

(단위 : 천원)

구분	대출한도	이자율 (%)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조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은행 여신 규정 준수
화장실 개선자금	10,000	1%	3년	3년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20,000	3%	3년	3년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0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용자 범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만 가능
- 화장실 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범위내 가능
-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장비
 구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시설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별지 제1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용 자 신 청 서

신 청 인	①대 표 자 성 명		②주인등록 번 호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소 재 지)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체규모	⑦영업장총면적	m ²	⑧자 산 총 액	천원
대상업종	⑨업 종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		
자금용자 신청내역	⑩실소요 금액		⑪용자신청금액	⑫ 비 율 (⑪/⑩)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류확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 정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개선용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	--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개 선 용 자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⑤영업장총면적	㎡ (평)		
	⑥계 획 내 용	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⑦시 공 업 체			
자 금 용 자 신 청 내 역	⑧ 실 소 요 금 액	⑨용자신청금액	⑩비 율(⑨/⑧)	⑪ 비 고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공사견적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 1. 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겠으며
 6개월
 용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귀청에 사전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 ① 시설개설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경우
 - ③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단, 영업자 지위승계시 가족일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모범음식점이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 3.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후 15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 4.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용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용자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	업 소 명		허 가 번 호	
	업 종		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	대 지		건 물 규 모	
	영업장면적	m ²	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당 : 소속 직 성명 (인)

(뒷면)

시설개선 신청시 사진(신청일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개선대상은 시설개선별 구체적(명칭별)으로 작성

(뒷면)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업 소 전 경)

(개 선 완 료 시 설)

※시설개선별 구체적(명칭별)으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용자 사후관리 카드

영업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	총면적 : m ² / (영업장: m ² , 조리장: m ² , 화장실: m ²)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 정 일	
용 자 신 청 일		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		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용 자 용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용 자 대 상 자 심 의 서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 신청액 : , 자부담 :)			

2. 용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 설 개 선 용 자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 · 폐업 여부	
2.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 · 변태영업행위 행정처분 여부	
3.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4.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시설개선용자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용자사업이행확약서			
3. 공사견적서			
4. 영업허가(신고)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20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실 · 과장)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 회계공무원 근무기간명세서

담당업무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근무기간	현근무처

- ※ 담당업무 : 기금운용관, 기금지출원, 담당공무원으로 구분기재
- ※ 현근무처 : 보직변경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부서 또는 팀명 등 구체적 기재
- ※ 작성기준일 : 지침 시달 시부터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계관리

훈 령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 3.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 및 복지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제8조제3항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모 보 수 원	의 료 급 여 관 리 사	환 미 화 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현업 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 계	162	17	9	6	2		5	1	139
본청 소계	161	16	8	6	2		5	1	139
기획홍보실									
총 무 과	2	2	2						
교육지원과									
재 무 과									
세 무 과									
민원봉사과	2	2	2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1	1	1						
주민생활지원과	1	1						1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1	1			1				
위 생 과									
청소행정과	142	3		3					139
건 설 과	9	4	1	3			5		
건 축 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2	2	1		1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1	1	1						
교통민원과									
의회사무국 소계	1	1	1						
의회사무국	1	1	1						
직속기관 소계									
보 건 소									
검단보건지소									
출장소 소계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소계									
검암경서동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노동부수원	의료 급여 관리사	환 미 화 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현업 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연 회 동									
가 정 1 동									
가 정 2 동									
가 정 3 동									
신현원창동									
석 남 1 동									
석 남 2 동									
석 남 3 동									
가 좌 1 동									
가 좌 2 동									
가 좌 3 동									
가 좌 4 동									
검 단 1 동									
검 단 2 동									
검 단 3 동									
검 단 4 동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 속 감 시 청 원 경 찰		
			소 계	녹지훼손단속	노점상단속
총 계	26	21	5	3	2
본청 소계	25	20	5	3	2
기획홍보실					
총 무 과	22	20	2		2
교육지원과					
재 무 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 생 과					
청소행정과					
건 설 과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 속 감 시 청 원 경 찰		
			소 계	녹지훼손단속	노점상단속
건 축 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3		3	3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의회사무국 소계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소계	1	1			
보 건 소	1	1			
검단보건지소					
출장소 소계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소계					
검암경서동					
연 회 동					
가 정 1 동					
가 정 2 동					
가 정 3 동					
석 남 1 동					
석 남 2 동					
석 남 3 동					
가 좌 1 동					
가 좌 2 동					
가 좌 3 동					
가 좌 4 동					
검 단 1 동					
검 단 2 동					
검 단 3 동					
검 단 4 동					